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

1. 회부경위

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2013년 9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O 보은군이 대국민 산림 휴양·치유, 체험시설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'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'에 편입되는 도유림과
- O 우리 도가 산림자원 조성에 적합한 보은군유림을 교환하여 도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 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□ 재산의 취득·처분

≪공유재산 교환≫

O 교환시기: 2013. 11. ~ 2013. 12.

O 교환내역: (도 ↔ 보은군)

(단위:m², 처워)

구분	소재지	면적	재산가액	비고
교환	4필지	1,523,452	641,435	보은군
	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산1	331,240	122,559	
	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산3-1	492,293	197,409	
	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산11	239,207	96,640	
	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산19-1	460,712	224,827	
교환	1필지	834,843	666,205	충청북도
처분	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산19-1	834,843	666,205	

[※] 재산가액은 2013년 개별공시지가 기준

4. 검토의견

○ 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변경안은 보은군이 대국민 산림 휴양·치유, 체험시설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'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'에 편입되는 도유림과 우리도 산림경영에 적합한 보은군유림을 교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1부.